

제 27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9. 1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9월 17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80
- 나. 제 출 자: 정정희 의원 외 9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9월 3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9월 9일

2. 개정이유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서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, 정의, 적용 범위 등을 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~제11조)
- 다.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을 규정(안 제12조~제18조)
- 라.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규정(안 제19조~제25조)
- 마.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(안 제26조, 제27조)

바.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타사항(안 제28조~ 제4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(시행령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0. 9. 4. ~ 9. 8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부패방지권익위법’) 제8조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7조에서는 “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23조에서는 각 의회의 의장은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나.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23조에서 위임한 우리구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

○ 주요내용으로

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부분으로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
-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채용, 계약, 인사, 예산 등에서 금지하고 제한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서는 이권개입 금지, 알선·청탁 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국내외 활동 제한,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6조와 제27조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
- 안 제28조에서 제41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

○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며,

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조에서 정한 ‘공직자’¹⁾에 해당됨
- ‘공직자’는 관련법에 의거 “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
1) “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. 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

-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제36조에 의원의 의무로
 -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,
 - 청렴의 의무를 지며,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,
 -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단지 규정뿐 아니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,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로부터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고 있음
- 각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법령에 정한 의무와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
 - 각 의회의 실정에 맞는 자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2019년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173호에 의거 각 지방의회별 의원행동강령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한 바 있음
 - 다만, 각 구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구별 상황에 따라 규정 및 제한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,
 - ※ 서울시 각 자치구별 행동강령 규정 현황 참조(서울시 17개구 제정·운영 중)
- 관련 법령 및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의원의 신분 및 활동 등을 폭 넓게 규율하는 내용이므로 개별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서울시 각 자치구별 행동강령 규정 내용 현황

지방의회 명	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	민간분야 업무활동 (의장, 위원장 등)	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(약속)	자문위원회 위원 공무원 1/2	자문위원회 위원 임기	제정/개정
강북구의회						2019.11.15
광진구의회	없음	없음				2018.07.20
구로구의회	없음				2년	2014.10.23./ 2019.11.14
도봉구의회						2014.04.24./ 2020.07.16
마포구의회	없음					2017.12.28./ 2020.06.04
서대문구의회				없음		2019.07.10
성동구의회	없음	없음				2018.05.16
성북구의회						2013.12.31./ 2019.11.07
은평구의회	없음	없음	없음		2년	2013.11.21
강남구의회	없음	없음	없음		2년	2017.09.29
강동구의회	없음	없음	없음		2년	2015.02.25
관악구의회						2013.12.31./ 2020.07.09
금천구의회	없음	없음				2017.10.13
동작구의회						2017.07.13./ 2020.07.09
서초구의회	없음	없음	없음		2년	2015.08.10
송파구의회						2013.09.26./ 2019.10.10
영등포구의회	없음					2019.03.21./ 2020.05.28

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8조(공직자 행동강령)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.

1.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개입·알선·청탁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
4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,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3조(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)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.

-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